○ **경감적용기간** :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
다만,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: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
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: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

※ 무보수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, 복직 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함(보정65710-90 2001.1.20.)

※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휴직한 사업장에서도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, 휴직 사업장과 근무한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 납부

※ 무급노조전임자 : 이중자격 가입자와 동일하게, 원소속사업장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률을 적용한 보험료와 노동조합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많은 쪽으로 부과

❑ **섬·벽지 경감**

○ **신청대상**

- 섬·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(경감코드 41)
- 섬·벽지에 거주하는 가입자(경감코드 42)
- 사업장 소재지가 섬·벽지 지역은 아니지만 섬·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입자(파견등)(경감코드 43)

○ **경감률**: 보험료액의 100분의 50

○ **경감적용 방법** :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에 의하여 적용

○ **제출서류**

- 41 섬·벽지(사업장)경감 : 직장가입자(근무처, 근무내역) 변동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
- 42 섬·벽지(거주지)경감 : 직장가입자(근무처, 근무내역) 변동통보서와 주민등록등본
- 43 섬·벽지(파견등)경감 : 직장가입자(근무처, 근무내역) 변동통보서와 인사명령서등 섬·벽지 근무여부 확인서류

※ 제출서류 중 공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

※ 섬·벽지 지역은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참고

❑ **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**

<국민건강보험법>

제70조(보수월액)

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17.4.18>

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(이하 "휴직자등"이라 한다)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(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>

제33조(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)

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, 급료, 보수, 세비(歲費), 임금, 상여, 수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6.30>

1. 퇴직금

2. 현상금, 번역료 및 원고료

3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차목 ·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제38조(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)
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[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(이하 이 항에서 "성실신고사용자"라 한다)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]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(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) 적용한다. <개정 2013.9.26>
1.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
2.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

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,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<신설 2013.9.26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29>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(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
가.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
나.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

<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>

제43조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)
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.

○ **보수**란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임
– 단, 퇴직금, 현상금, 번역료 및 원고료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(동법 제12조제3호차목·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)은 보수에서 제외함
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명시된 「소득세법」 제12조(비과세소득)의 관련 규정이 아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

○ **식대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러목)**
– 식사·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20만원(연간240만원)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… 2023년 1월부터 적용
–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,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됨

○ **자가운전보조금(교통비)(「소득세법」 시행령 제12조제3호)**
–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(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,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제외)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,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.
▶ 근로자 소유 및 임차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

○ **국외근로소득(「소득세법」 제12조차·파·거목)**
–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**보수에 포함**

○ **비과세(보수 제외) 학자금의 범위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아목 및 시행령 제11조)**

– **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**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(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)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·수업료·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

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·훈련을 위하여 지급 받는 것일 것

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

③ 교육·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·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

※ 자녀학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52조 특별공제 대상에서 삭제(2014. 1. 1.부)되었고, 비과세 소득도 아니므로 보수에 당연히 포함

○ **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, stock option)**

– 스톡옵션(stock option)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,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,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(이익)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. 다만,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 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

※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: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

○ **법인대표자 인정상여**

– 「법인세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'법인대표자 인정상여'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3조의'근로의 대가'에 포함되지 않는다는'대법원 판결'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(2015두37525)

○ **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**

– 2013년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보수에서 제외

○ **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(「소득세법」 제22조제3항)**

–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3조의'퇴직금'에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(제2016-이의-02327호)

* '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의 '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'을 뜻함

○ **해고예고수당**

–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(해고의 예고)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, 보수에서 제외한다.

○ **정부·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**

–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7호에 의거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(2013.1.1. 발생분부터)

○ **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**

– 연봉계약 체결 시 노·사간 합의(계약)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,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,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 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

○ **출산수당·보육수당**

–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

○ **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**

–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, 이는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

○ **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더목)**

–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,000만 원(2020.2.11.시행 개정 전 2,500만 원)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.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

▶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

-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-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-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, 돌봄 · 미용 · 여가 및 관광 · 숙박시설 ·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, 매장 판매 종사자, 상품 대여 종사자,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, 운송 · 청소 · 경비 · 가사 · 음식 · 판매 · 농림 · 어업 · 계기 · 자판기 ·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

○ **연구보조비·연구활동비(「소득세법」 시행령제12조제12호)**

–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

▶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(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의 교원

▶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)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

▶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

○ **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)**

–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,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

–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말(퇴직)정산 근무월수에 포함

–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(퇴직)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"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"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"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"을 하면 '89 그 밖의 사유' 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, 연말(퇴직)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주의

–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

○ **직무발명보상금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어목 및 시행령 제17조의3)**

– 종업원 등 또는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 5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보수에서 제외,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수 포함

※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

○ 원어민교사가 지급 받는 급여

– 전액 보수에 포함 : 월급여, 정착금, 항공료, 입·출국지원비(신규계약 및 계약완료) 등

※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항목별 보수포함 여부(부과부-2545호(2010. 9. 3.))

○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

–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하며,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·공제·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

–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

○ 우리사주

-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, 보유하게 하는 제도임

- 우리사주 취득에는 개인(조합원) 출자에 따른 것과 법인 출연(금)에 의한 것이 있으며,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 선택 시 우리사주 인출금액은 인출연도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

<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과세이연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)>

○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여 우리사주 취득 시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(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천500만원)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후,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

○ 법인 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%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후, 조합원이 해당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

- 공단 보수총액 신고

(1) 조합원 출자로 우리사주 취득 시 출연금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

[그림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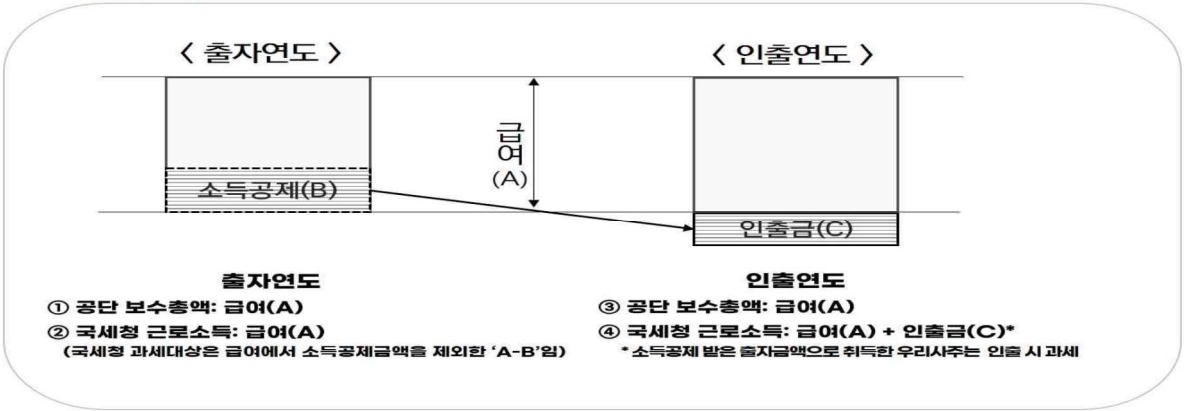

▸ 보수총액 신고대상

• 출자연도: 급여(A)* … [그림1]의 ①

* 소득공제금액(B)을 제외하지 않음

• 인출연도: 급여(A) … [그림1]의 ③

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, 해당 인출금(C)은 출자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, 이를 제외하고 급여(A)만 보수총액으로 신고

▸ **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, 총 소득에 인출금(C) 포함** … [그림1]의 ④

• **해당 인출금(C)은** 개인 출자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*하는 경우, **인출 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 가능**

* 증빙서류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출자, 인출연도),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, 주권인출내역서 등

• 예시

○ 급여 4,000만 원(출자, 인출연도 동일)
우리사주 출연금 600만 원, 출연금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
인출금 200만 원인 경우
- 출자연도:
공단 보수총액 4,000만 원(급여)
국세청 근로소득 4,000만 원(급여)
※ 국세청 과세대상은 3,600만 원(급여 - 소득공제금액)
- 인출연도:
공단 보수총액 4,000만 원(급여)
국세청 근로소득 4,200만 원(급여 + 인출금)

○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인출금 200만 원은 출자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으므로, 보수에서 제외 가능

(2) 법인 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비과세한 경우

[그림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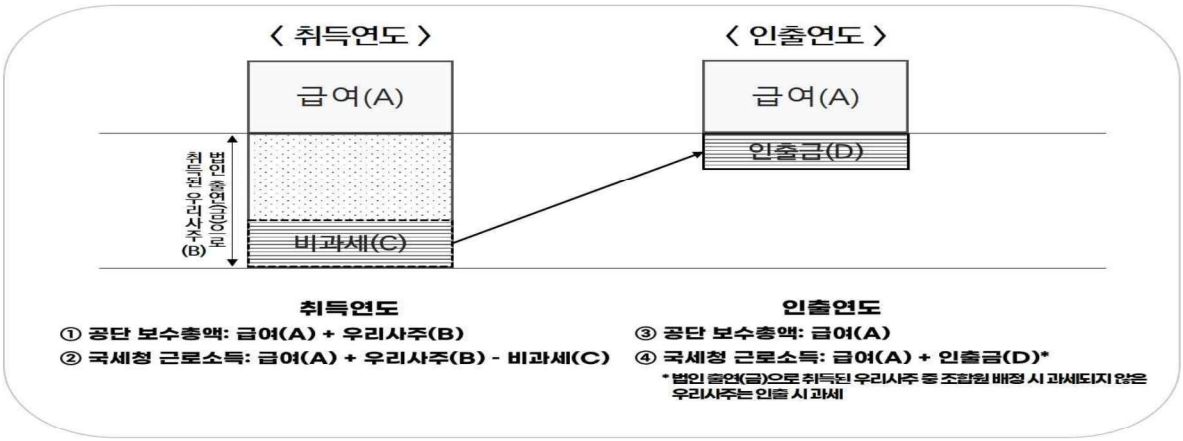

▸ **법인 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**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면 **그 배정 시점에**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**소득이 발생하며, 이는 보수에 해당함**

▸ **보수총액 신고대상**

• **취득연도: 급여(A) + 법인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(B)*** … [그림2]의 ①

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비과세소득은 보수에 포함하므로, 비과세금액(C)을 제외하지 않음

• **인출연도: 급여(A)** … [그림2]의 ③

법인 출연(금)에 의한 우리사주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 과세하는데, 해당 인출금(D)은 취득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, 이를 제외하고 급여(A)만 보수총액으로 신고

▸ **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, 총 소득에 인출금(D) 포함** … [그림2]의 ④

• **해당 인출금(D)은** 우리사주 취득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* 하는 경우, **인출 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 가능**

* 증빙서류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취득, 인출연도),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, 주권인출내역서, 자사주 배정내역 등

• 예시

○ 급여 4,000만 원(취득, 인출연도 동일)
법인 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 1,000만 원, 비과세 800만 원
인출금 200만 원인 경우
- 취득연도:
공단 보수총액 5,000만 원(급여 + 우리사주)
국세청 근로소득 4,200만 원(급여 + 우리사주 – 비과세)
- 인출연도:
공단 보수총액 4,000만 원(급여)
국세청 근로소득 4,200만 원(급여 + 인출금)

○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인출금 200만 원은 취득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으므로, 보수에서 제외 가능